

광주지방법원 2019. 1. 9 선고 2018가단10666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중앙회

피고B(개명 전 성명: C)

변론 종결2018. 12. 12.

판결 선고2019. 1. 9.

주 문

1. 피고는 D에게,
 - 가.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03. 3. 20. 접수 제498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,
 - 나.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06. 11. 6. 접수 제232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나경선

별지